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00회 제2차 정례회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2023. 11.

복지문화 위원회  
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3. 11.

복지문화위원회

#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이진환 의원 등 7명
- 발의일자: 2023. 11. 3.(금)
- 회부일자: 2023. 11. 3.(금)
- 검토기간: 2023. 11. 6.(월) ~ 11. 10.(금)

### 2. 제정이유

-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문화콘텐츠산업의 중·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(안 제6조)

### 4. 검토의견

- 이 제정조례안은 신성장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인식제고를 통해 문화콘텐츠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, 문화콘텐츠산업은 1980년대 영화산업, 90년대 음악산업, 2000년대 방송산업, 2010년대

- 살펴보면 문화콘텐츠산업은 1980년대 영화산업, 90년대 음악산업, 2000년대 방송산업, 2010년대 게임산업, 2020년대 웹툰산업으로 확장하면서 경제성장과 문화적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,
- 2021년 기준 한국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37.5조 원(전년대비 7.2% 증가), 수출액은 124.5억 달러(전년대비 4.4% 증가), 사업체 수 약 10만 8천 개(전년대비 9.1% 증가)로 지난 5년간 매년 매출액 5.0%, 수출액 10.0%, 사업체 수 0.7%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.
- 또한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3조의2에서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,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3조에서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4호 더목에서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두고 있어,
- 달서구의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해 규정한 이 조례안은 정책의 필요성이 충분하고,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안 제6조(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)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고 하고,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,
- 그 기능적 유사성에 따른 기능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그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안 부칙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○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1조의 조명과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.

## ○ 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부칙	부칙
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	
제8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	
6.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	

# 관계법령

## □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문화산업”이란 문화상품의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·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.
  - 가. 영화·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
  - 나. 음악·게임과 관련된 산업
  - 다. 출판·인쇄·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
  - 라.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
  - 마.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
  - 바. 만화·캐릭터·애니메이션·에듀테인먼트·모바일문화콘텐츠·디자인(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)·광고·공연·미술품·공예품과 관련된 산업
  - 사. 디지털문화콘텐츠,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·가공·개발·제작·생산·저장·검색·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
  - 아. 대중문화예술산업
  - 자.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, 조형물, 장식용품,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
  - 차.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. 다만,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제2호의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.
  - 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
2. <생략>
3. “콘텐츠”란 부호·문자·도형·색채·음성·음향·이미지 및 영상 등(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)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
4. “문화콘텐츠”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.
- 5.~21. <생략>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 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·연구사업의 지원,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 □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콘텐츠”란 부호·문자·도형·색채·음성·음향·이미지 및 영상 등 (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)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
2. “콘텐츠산업”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(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)의 제작·유통·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.
- 3.~7. <생략>

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저작권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“저작물”은 “콘텐츠”로 본다.

제3조의2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,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,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~3. <생략>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  
가.~너. <생략>

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5.~7. <생략>